

##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(이하 “의료적성검사”라 한다) 항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검사대상)** ①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.

② 제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.

**제3조(검사항목)**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.

**제4조(검사방법)**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.

**제5조(측정내용)**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.

**제6조(판정기준)**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.

②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.

**제7조(의료적성검사기관)** ①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「의료법」

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(이하 “의료적성검사기관”이라 한다)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의료적성검사기관의 검사자는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[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(K-MoCA만 해당한다) 및 미로검사(Maze test) 사본을 말하며,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·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]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은 제1항의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**제8조(종합판정표)** ①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와 제7조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(이하, “의료적성검사서등“이라 한다)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하고 수검자는 발급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

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중 혈압,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(또는 검진) 결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내에 검사(또는 검진)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에 한해 인정한다. 다만,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.

1. 건강검진결과통보서
2. 혈압 검진결과서
3. 혈당 검진결과서
4.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

④ 공단은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(이하 “종합판정표”라 한다)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(송부)하여야 한다.

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(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)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건을 알도록 한다.

⑥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등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결과를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⑦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한다.

**제9조(검사신청)** 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)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등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기록·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재검사기간 등)** ①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.

②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이외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운송사업자의 의무)** ①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2조(검사서 판정절차 등)** 의료적성검사서등 판정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검사수수료)**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제7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.

**제14조(검사의 개발 등)**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, 측정내용,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·감독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**제16조(재검토기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

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 
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**부 칙**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